

[]종합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

[]중계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
	편성책임자	주민등록번호
	최다액 출자자	생년월일 (또는 법인등록번호)

허가 내용	방송국의 명칭	사업의 종류
	허가번호 (승인번호)	허가일 또는 최근 재허가일 (승인일)
	소재지 (주된 사무소) (전화번호:)	방송구역
	그 밖에 허가의 주요 내용	

법 또는 허가 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	위반사항	위반횟수	시정조치

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	사업수지견적	역무제공내용	수신자 불만처리

방송시설 배치 및 개요 (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 우에만 작성합니다)	
---	--

「방송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

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종합 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신청합니다.
[] 중계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. 2. 사업계획서(운영실적서를 포함합니다) 1부. 3. 시설설치계획서(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합니다) 1부.	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: 100,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: 25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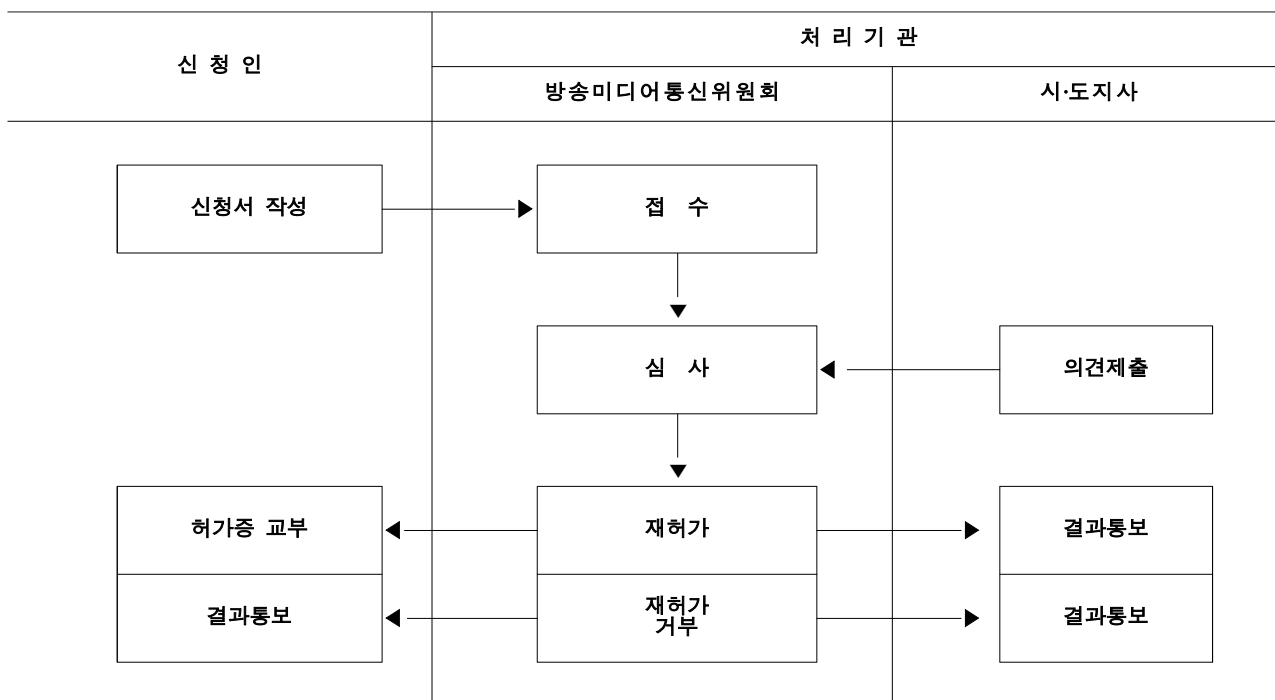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편성책임자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※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